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1043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21. 3. 5.

판결 선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82,781원 및 그 중 3,548,063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7. 5. 8.자 매매계약을 5,808,7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5,808,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 2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2.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D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납부를 지체하였다.

나. D는 2017. 9. 18.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원금3,588,687원)을 양도하였고, 2017. 10. 24.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5. 8.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 E의 금융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7. 5. 8. 10,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카단1013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11,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5.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8. 3. 12. 피고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소5285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 C는 2018. 4. 18. F으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B의 처 G 명의의 금융계좌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D로부터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피고 B에 대한 제2항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주식회사 H,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

피고 C는, 피고 B의 재산상황 또는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채 누나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피고 B의 신용상태 및 채무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들이 친인척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점, 피고 C가 이후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에 걸쳐 통정허위표시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추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소와 같은 사해행위가 문제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C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배은창

부동산 목록

1. 충청북도 제천시 대 116㎡

2. 충청북도 제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마사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와 및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변소
50.58㎡ 주택, 3.21㎡ 변소 끝,

